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미 의회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 대통령, 국무장관 및 의회에 정책권고를 하는 독립적이며 초당적인 정부자문기구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조약에 명시된 우리의 법률적 권한과 기준에 근거하여 이러한 정책권고를 한다. 2016년 연례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연례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중대한 사건 중에는 이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도 있다.

## 북한

**개요:** 북한은 변함 없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의 하나이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꼽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정권의 절대적인 사상이 정치, 경제, 도덕 등 북한 사회의 모든 면을 유지하며 종교를 비롯하여 정권의 사상을 대체하는 모든 신념은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은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체포, 고문, 투옥, 심지어 처형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의 가족들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구금되거나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투옥되는 등 가족과 동일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극악한 탄압을 근거로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6년에도 역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 7월에 지정하였다.

## 배경

북한은 지난 수 십 년간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김 씨(氏) 일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도록 세뇌시켜 왔다. 이와 같이 충성심을 강요함으로써 개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여지도, 종교나 신념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형태의 신념은 모두 버리고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나 다른 신념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총 인구는 거의 2,500만 명에 이르는데, 유엔은 이 중 기독교인을 2 퍼센트 미만인 20-4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한 통계는 너무 오래 되었거나 확인이 힘든 상황이다. 불교 및 유교, 민속신앙인 천도교와 러시아 정교회 역사도 긴 편이다.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로켓 발사, 기타 여러 가지 무기 사용에 관한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의 일부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권 교체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계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 보유를 도모하는 다른 나라들 간의 거래선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축하 행사 및 군사 퍼레이드에서 자국이 보유한 무기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설립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은 북한과 북한 정권에 의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2015년 4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으며, 당시 북한 대표들은 탈북자들의 진술을 중단시켜 회의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지난 해 6월,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 감시를 전담하는 유엔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하였다.

## 2015-2016년 종교의 자유 실태

**기독교에 대한 정권의 통제 및 억압:**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은 조직된 모든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지만 특히 기독교에 대해 가장 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종교를 전파하고,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며, 기도, 찬송 등의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 기독교인은 보통 투옥되거나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기독교인들은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한층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인 수만 명이 현재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거나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적발될 경우 자신과 가족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을 억누르며, 이에 따라 정권의 억압 정책은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을 위해 정권의 통제로 운영되는 예배 장소 몇 곳이 아니면 보통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정권이 운영하는 북한천주교협회는 로마 교황청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북한에는 사제를 둔 천주교회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부터 남한의 사제가 북한에 방문하여 미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방문 사제가 특별 미사를 진행하도록 하던 관행에서 변화한 것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로부터 외교적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빈번하게 외국인들을 억류한다. 인도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제들이 특히 위험하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그 위험은 한층 더 높아진다. 일례로 2015년 초, 북한 당국은 20여년간 인도주의 목적으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임현수 목사를 억류했다. 임현수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 시민권자이다. 북한 법정은 임현수 목사에게 북한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모호한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2015년 3월, 북한은 남한의 김국기 목사와 채춘길 목사를 지하 교회를 일부 이용한 간첩 혐의로 억류했다. 지난 6월, 이 두 사람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매체의 부재로 라디오는 북한 주민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종교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한이나 중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북한 내부로 신호를 송신할 수 있고, 종종 종교 프로그램도 송신한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7월, 스페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오 드 베노스(Alejandro Cao de Benos) 북한대외문화관계위원회 특별대표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 거짓”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북한 난민:** 중국은 변함 없이 북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국이자 북한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다. 중국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예고 없이 실시한 수소 폭탄 실험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어떠한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거부해 왔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의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난민이 대거 유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늘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을 강제 소환하고 있다. 이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UN Convention on Refugees)과 1969년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 양국은 최근 국경 양쪽에 벽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은 또한 국경을 건너다 적발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중국군이 연변에서 북한 난민 한 명을 총으로 쏘아 사살하기도 했다.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 중 적발되거나 중국에서 강제 복송되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선교사와 접촉했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더욱 심한 처벌을 받는다.

## 미국의 정책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북한 내에 공식적인 외교공관을 두고 있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수 십 년에 걸쳐 북미 관계를 규정해 왔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양자간 그리고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협력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2015년,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일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해 왔으며,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수소 폭탄 실험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까지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 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국 외교 수장들과 회담을 가졌다.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유엔주재 미국대사 역시 유엔안보리에서 비슷한 요청을 하였고,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2월에는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가담하거나 이에 책임이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자를 포함하여 북한과 거래를 하는 개인에 대해 의무적이며 동시에 자유재량에 의한 제재를 가하고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 및 “심각한 인권탄압이나 검열의 책임자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북한제제이행법(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을 미 의회가 승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시켰다.

2015년 2월에는 유엔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의 연례 인권 결의안을 예상한 북한의 핵 위협과 그에 대응한 핵 위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5년 4월 개최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사만사 파워 대사는 북한의 인권탄압이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미국이 유엔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과 8개 회원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사람들을 빈번하게 억류하고, 미국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평가절하하기 위한 자백을 강요한다. 2015년 4월, 북한은 인도주의 구호 단체를 설립한 미국인 산드라 서(Sandra Suh)를 선전활동 혐의로 추방하였으며, 역시 4월에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을 체포하였다. 북한 당국은 그가 중국으로부터 불법 입국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5월, 주원문은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일부러 체포되려고 했다고 말했으나, 그것이 실제 그의 의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원문은 10월에 한국으로 석방되었다. 2016년 1월에는 버지니아대 학생인 오토 프레데릭 Warmbier가 “적대 행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단체여행으로 북한을 방문 중 그가 속한 단체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억류되었다. 2016년 2월, 그는 혐의를 공개적으로

자백하였고 오하이오 소재의 한 교회에 속한 누군가와 의 공동 계획에 따라 행동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목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며 왓비어 역시 그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특별관심대상국 지정에 따르는 제제를 가하는 대신 일관되게 기존의 제제를 적용해 왔으며, 이 경우에는 1974년 무역법의 잭슨-배닉 개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을 통해 제제를 가해 왔다. 북한 및 북한 노동당에 대한 새로운 제제는 2015년 1월 2일,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하였다. 2015년 11월,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개입 및 연관성”을 이유로 개인 4명과 1개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가 그 중의 한 명이다.

## 권고사항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탄압은 타당한 경우 핵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인권과 핵 문제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 유엔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대통령령이나 의회의 조치 또는 유엔을 통해 가해지는 제제의 일환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의 특정 관계자 또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제를 가해야 한다.
-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 5년 내에 유엔 조사를 추가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유사하며 그와 연계된 실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담당 특별대사(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북한과의 양자 회담에 참석시켜 인권 및 종교의 자유 문제를 회담 내용에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타당한 경우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비핵화에 관한 다자간 회담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일본, 한국 등 역내 동맹들과 협력하여 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제,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정한 우려를 제기하고,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 폐쇄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 북한 내 그리고 국경 지역에 송신되는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및 휴대전화, USB 메모리, DVD 등의 정보기술 확산, 인터넷 접속 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가장 악명 높은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지를 독려하고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 즉,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하고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및/또는 유엔고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중단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 내 정보 및 언론매체의 접근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난민 보호 및 재정착, 인도적 지원의 전달 감시를 위한 비정부기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승인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